



화장품 식별·재질표시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Measures and Issues of Cosmetic Packaging Identification

小又昭彦 / (주)자생당 기술부

I. 서두

제지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대한 식별 표시는 2001년에 개정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기초하여 같은 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내용은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용기포장식별표시검토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것이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본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중에 나와 있는 “사업자의 연구 과제”로서 “사업자 또는 업계마다 대응에 맡길 사항”에 관해 각 업계마다 가이드 라인, 매뉴얼 등으로 정리한 것을 제안받아 그 검토를 동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포장에 관한 위원회”에서 해 왔다.

이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가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실운용상,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는 데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용기포장식별표시 등에 관한 화장품 업계의 가이드 라인”을 모아 정리하였다.

화장품 업계의 각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 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분리 배출에 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식별표시 등에 관한 적절한 표시를 연구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아래에 화장품 업계의 가이드 라인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식별표시

복수 파트(Part)로 이루어진 용기포장(용기, 캡, 중간 마개 등 복수의 파트로 구성된 용기포장)로서 그 내용품의 누수·흘어짐 등을 방지한다.

또한 안전·위생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진 파트에 대해서는 용기(보틀, 튜브, 커ም팩트 등)와 일체로 간주하여 “같은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분일괄표시가 가능한 것으로서 운용한다.

1-1. 다중 용기포장 표기방법

다중 용기포장 등에 있어서 전체일괄표시 및 부분일괄 시에 이용하는 부재(부위)의 명칭은, [표 1]에 나와 있는 “용기포장 명칭 구분”에 따



세계의 포장

르며 “표시할 수 있는 부재의 명칭”을 선택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중 용기포장에서 같은 “표시할 수 있는 부재의 명칭”을 사용해야만 할 때는 명칭 앞에 내, 외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한다.

단 “용기포장의 명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용기포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부재의 명칭”을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 부분일괄표시 및 전체일괄표시에

부분일괄표시 또는 전체일괄표시의 표시 예를 [그림 1]에서 [그림 3]에 제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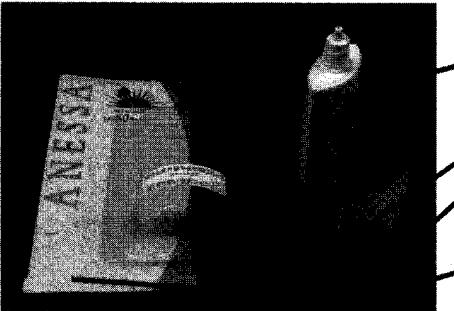
이 표시 예의 기본적인 컨셉은 “같은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것”은 부분일괄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표시 스페이스 등의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용기포장일 경우 해당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중 용기포장 등을 구성하는 표시가능한 다른 용기포장에 전

[표 1] 표시가능한 부재의 명칭

번호	용기포장의 명칭 구분	표시할 수 있는 부재의 명칭
1	입구가 좁은 용기	용기 또는 보틀
2	입구가 넓은 용기	용기 또는 보틀
3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용기
4	튜브	튜브
5	컴팩트	컴팩트 또는 케이스
6	한지 용기	용기
7	종이팩	용기
8	파우치 팩	봉투
9	스텐딩 파우치	봉투
10	필로우 포장	봉투
11	오버캡	캡
12	마개	캡 또는 뚜껑
13	입구 씨일	씨일
14	중간마개	중간마개
15	중간 포장틀	중간 포장틀
16	디스펜서	펌프 또는 스프레이
17	펌프	펌프
18	대지(제지로 한정한다)	대지
19	블리스터	커퍼
20	개별포장	케이스 또는 상자
21	중간틀	틀
22	슈링크	필름

[그림 1] 부분일괄표시 예

제품 타입	부위	재질	부문일괄표시
블리스터 용기에 넣은 제품			
	용기	PE	 용기 : PE 튜브 : PP
	캡	PP	용기에 표시
	블리스터	PET	대지에 표시
	대지	종이	 대지  커버 : PET

체일괄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지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표시를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용기포장이 식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포장으로 한정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포장에 대해 종이 및 플라스틱 표시를 일괄표시할 경우 일괄표시를 붙일 대상에 식별마트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위의 식별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별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제 캡과 중간 마개가 있는 유리 용기의 경우에는 [그림 2]에 나와 있는데도 용기에 식별 마크를 붙이지는 않고 “캡, 중간 마개는 플라스틱입니다”라고 표시하기로 하였다.

[그림 2] 부분 일괄표시의 표시예(식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포장의 경우)

제품 타입	부위	재질	부분일괄표시
용기밖에 표시공간이 없는 제품			
	중간마개	PE	용기에 표시
	캡	PP	용기에 표시
	용기	유리	캡(PP), 중간(PE)은 플라스틱입니다 또는, 플라스틱 : 캡(PP), 중간(PE)
	중간	종이	케이스에 표시
			 케이스

[그림 3] 전체일괄표시의 예

제품 타입	부위	재질	전체일괄표시
플라스틱제 중, 용기,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무지필름붙착			
	용기	PET	대지에 표시
	중간	PET	용기에 표시
	케이스	종이	 케이스
	대지	PP	 용기, 중간 : PET 필름 : PP
			케이스에 표시



세계의 포장

2. 재질 표시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재질표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연구하기로 되어 있지만 화장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시 스페이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질표시를 할 경우에는 일본 플라스틱 공업연맹이 작성한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재 질표시 방법 매뉴얼”에 준하기로 한다.

3. 기타

사업자 또는 업계마다의 대응에 맡기는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에게 대응을 맡기기로 하였다.

1) “다중 용기포장 등에 있어서 전체일괄표시 및 부분일괄표시할 경우 표시부를 감싸는 외부 틀, 표시를 붙이는 장소, 병행 표기할 식별마크의 상대적 크기 등의 표기방법” 표시부를 감싸는 외부틀은 화장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시 스페이스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그것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지 외장과 플라스틱제 케이스(개별 포장)로 구성되는 다중 용기포장 등에서, 외부 상자에 일괄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일괄 표시를 붙일 대상(외부 상자)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큰 마크를 사용하고, 일괄적으로 표시될 대상(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보다 작은 마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다중용기포장 전체일괄표시 및 부분일괄표시



2) “다중 용기포장 등에 식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포장(유리병, 음료용 이외 금속 캔, 골판지, 음료용 제지용기포장 등의 용기포장)이 포함될 경우의 정보제공 방법”이다.

예를 들면 유리병과 플라스틱제 캡으로 구성되는 용기가 종이 외부 상자에 들어가 있는 다중 용기포장 등에서, 외부 상자에 일괄표시할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은 표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4. 문제점

4-1. 타 업계 가이드 라인과의 정합성

“사업자의 연구 과제”로써 “사업자 또는 업계마다의 대응에 맡길 사항”에 관하여 각 업계마다 가이드 라인, 매뉴얼 등의 형태로 정

[그림 5] 식별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용기포장



리한 것을 갖고 용기포장 식별표시검토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2000년 7월에 승인되었다.

바로 이것을 받아 각 업계가 가이드 라인 작성을 시작하였다.

화장품 업계는 비교적 빨리 2000년 10월에 작성하여 회원 기업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주지를 강조했으나 그 후 많은 업계가 업계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청량음료업계 : 2000년 12월, 의약품 업계 2001년 4월 등) 각각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양의 상품이라도 표시방법이 약간씩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일단 작성된 가이드 라인을 동등하게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럴 필요성은 있다.

4-2. 표시 대상인 그레이 존

이번 식별표시는 상품의 제지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용기포장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번 표시 대상은 용기포장 재활용법에서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의 용기재활용법 해설서에는 대상과 비대상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가루 위에 놓여 있는 셀로판 시트는 용기 안에 붙어 있는 거울에 분 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유사 예로서 설명서에 초밥의 중간 칸막이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로판 시트도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용기별 컴팩트 제품의 경우 컴팩트 케이스는 케이스 자체가 상품이 되기 때문에 표시 할 필요는 없다. 한편 가루 컴팩트를 세트해서 용기 일체형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컴팩트 케이스는 용기가 되기 때문에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설치형 샴푸 용기에서 애니 카세트 타입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도 바깥쪽 설치용 용기와 내용물이 들어간 카세트를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설치용 용기는 상품 자체가 됨으로 식별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용한 후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컴팩트 케이스나 설치용 용기는 용기로서 폐기될 확률이 높다.

더욱이 이번 법률에서는 업무용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일반 소비자용과 업무용으로 같은 상품을 제조할 경우 전자는 표시 의무, 후자는 표시 불필요가 되어 표시가 다른 두 가지 사양의 상품을 제조·관리할 필요성이 나온다.

식별표시에 관한 화장품 업계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이상과 같은 점을 예측할 수 있어 각 사업자는 판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본 법률 개정은 순환형 사회에 발 맞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분리 배출, 자치단체의 분리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혼란이 없도록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가 바람직하다. ko